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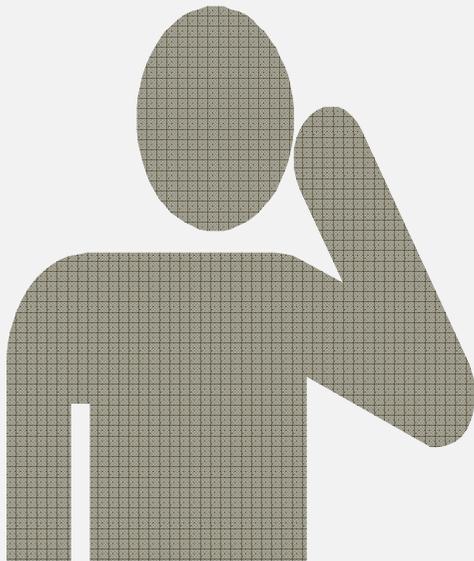
바로 알고 제대로 처리하기!

목 차

- I.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정의?
- II. 신고 및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신분노출 사례
- III. 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 IV.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V.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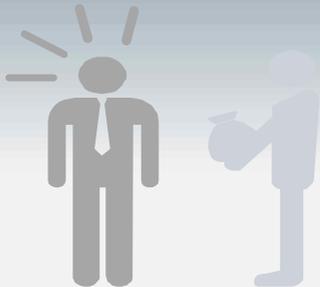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1 (가목)

-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기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나목)

-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목)

-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침해
행위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1.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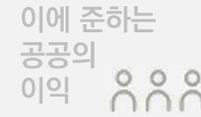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2. 안전분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3.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약취방지법

- 약취관리지역에 약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4. 소비자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 하는 행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성 민원이란 ?

-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민원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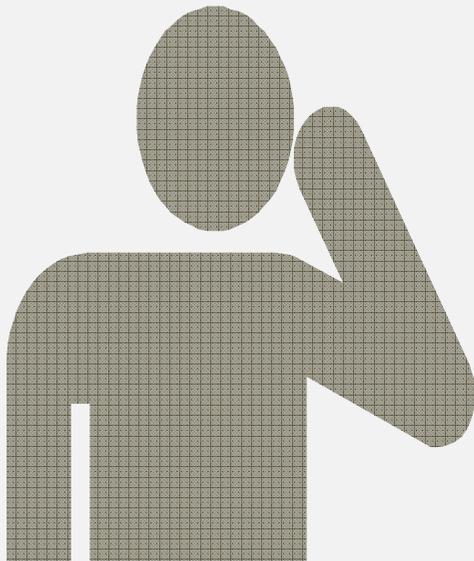
주의

비 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들어온 신고 중 피신고자를 특정하여 증거를 첨부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등도 모두 공익신고에 해당 (일반민원과 공익신고의 차이는 형식과 창구가 아닌 신고내용)





2. 신고 및 민원 처리시 개인정보, 신분노출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1)
신고성 민원
숙지 미흡

피신고기관에
신고자 정보
고의 누출

- ▶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 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 ▶ 철도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B공단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민원인은 인권위에 개인정보 관련 진정을 제기
 - ☞ 신고성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 처리
- ▶ C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부 공익신고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누설 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은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 해고하였음
- ▶ D공무원은 사학비리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를 해당대학 관계자에게 알려 주었으며,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함**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2)
접수·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 ▶ 소청위는 OO교사의 승진탈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E교육청에 자료를 요청 하였으며 E교육청은 이와 관련 OO교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청위에 제공, 소청위측도 민원인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소청 신청인에게 전달함**
- ▶ F공무원은 OO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중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
- ▶ G공무원은 모래섞인 시멘트 사용 사실을 신고한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내부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자 전화번호를 노출함
- ▶ H교육청은 예산부적정 사용 관련 소청심사청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학교의 요청에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그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송달됨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만으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판례)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3) 수사의뢰

- ▶ I공무원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함

(유형 4) 소송관련 문서제공

- ▶ J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제공
- ▶ K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자가 해당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5)
보도자료
및
언론유출

- ▶ L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OO 원무부장의 신고' 라는 신고자가 유추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남
- ▶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M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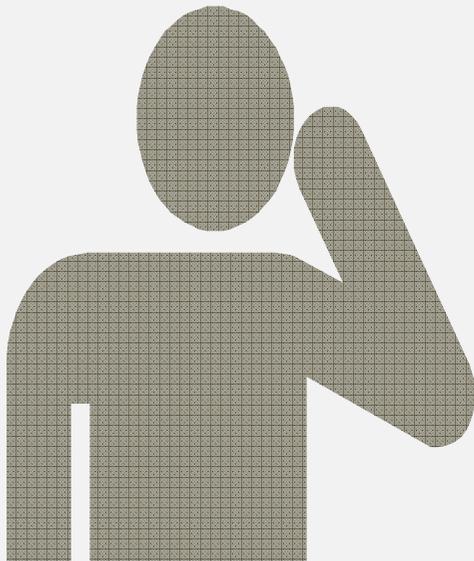
위반 시 처벌조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부패·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신고방법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제시

신고방법

- ✓ 방문·우편
- ✓ 팩스 044-200-7972
-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 전화(1398) 상담만 가능

일반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수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방법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첨부

신고 방법

- ✓ 부패신고와 같음

비실명 대리신고

- ✓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행정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국회의원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I . 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 · 처리 절차

<p>접 수 (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고서 기재사항,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 ② 공익신고 접수 ③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p>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을 확인하여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성 민원'의 경우 부패·공익신고로 처리</p>	
<p>확 인 (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p>처 리 (조사기관)</p>	<p>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p>관할이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p>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사실 등 통보

(주목!)

일반민원의 공익신고 전환 기능

- 민원이 내용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접수 · 담당자 지정 · 민원처리 단계에서 각각 ‘공익신고’로 전환 가능

< 일반민원 → 공익신고 전환 화면 >

① 민원 접수시 공익 신고 전환

[공통사항]

민원요지	민원절차 시 유용하게 쓰이도록 주요 키워드 위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자 이내로 입력
민원유형	일반민원
신고전환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익신고 <input type="radio"/> 소관업무 ※ 본 민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야	
관리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정민원 <input type="checkbox"/> 긴급민원 <input type="checkbox"/> 민원통합 <input type="checkbox"/> 집단민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요청
보안설정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민원 <input type="radio"/> 보안민원 <input type="radio"/> 특수보안민원 ※ 보안민원으로 설정 시, 부서 내 타 직함 등의 조회가 제한됩니다.

② 민원 처리시 공익 신고 전환

※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벗어나 동일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럼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서배정 및 이송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자세히 보기]

부서(대)지정 | 담당자(대)지정 | 업무처리인원지정 | 민원이송 | 민원처리(내역) | 일반<>기급

신고전환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익신고 <input type="radio"/> 소관업무 ※ 본 민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종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radio"/> 법정민원 <input type="radio"/> 결의민원 <input type="radio"/> 권위민원 <input type="radio"/> 기타민원 <input type="radio"/> 고충민원

팝업 페이지의 메시지

‘공익신고’ 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특히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로 전환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Ⅱ.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 처리 절차

처 리 (조사기관)

-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

다른 기관에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
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후속조치요구 (권익위)

- 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
- 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조 치 (조사기관)

- 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
-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



Ⅲ. 부패·공익신고(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개인정보
보호

- ✓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 피신고기관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원내용에 개인정보, 고소·고발성 제보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
 - 온나라 등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개되므로, 민원문서 기안 시 제목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치 금지



Ⅲ. 부패·공익신고(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보호·보상 제도 안내

- ✓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
 -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반드시 제공
 - ☞ 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규정 신설(17.10월 시행)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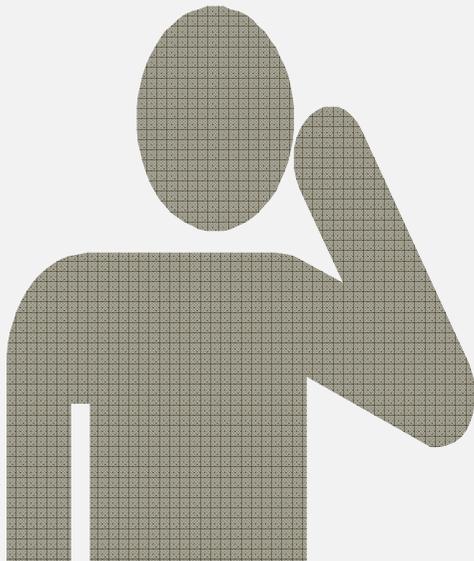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밀보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협조자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 조치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명단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 공개 금지 <p>☞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p>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발생시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상회복 조치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신고자 책임감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발견시 형,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변보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가능
신고방해·취소강요 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 취소 강요 금지



4.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조치 요청

경찰관서의장



신변
보호
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형·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징계·행정처분 하는 경우 징계권자, 처분권자는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직 무 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 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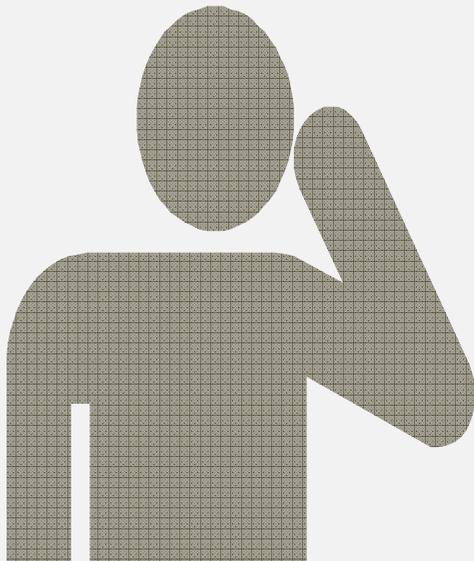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 처분액의 4~20%를 지급 (최대 3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공익신고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 (이사비, 소송비, 치료비 등)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 (친족, 동거인)

(참고)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제도 보호, 보상 비교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가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로 284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보상·포상 대상은 아님) 	신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및 기업 소관 행정·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비밀보호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불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비밀보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불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상한액:30억, 최저한도:없음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30억, 최저한도: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지급 * 상한액: 2억 	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상한액: 2억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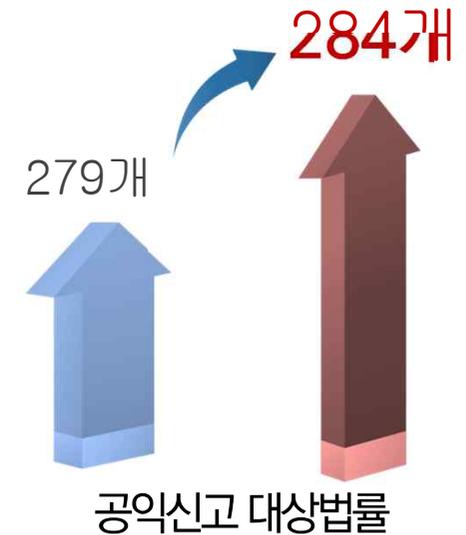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

➤ 대상분야 확대 (법 제2조)

*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신고대상 법률 추가 (별표)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법 제20조)
 -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법 제 23조)
 -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긴급 구조금 제도(법 제27조)
 -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법 제29조의2)
 -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벌칙 강화(법 제 23조)

위 반 행 위	기 존	개 정 안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시행령 제22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법 제8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 하도록 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강화

➤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법 제21 조의2)

내용	기존	개정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2천만원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2년 이내	이행 시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세상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